비씨체크(플러스)카드 개인회원 약관

제 1 조 (회 원)

-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.
- ② 본인회원이란 회원은행(이하'은행'이라 함)에 요구불 예금 계좌(이하'결제계좌'라 한다)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에 비씨플러스카드(이하 "카드"라 함)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.
-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, 결제계좌에서 현금의 인출등 카드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인한 분으로서,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. 이 경우 가족회원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.

제 2 조 (카드의 이용한도)

- 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은행이 정하여 카드발급시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송부시 통보하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예금 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은 제①항과 관계없이 별도의 신용구매한도를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된 한도는 카드 발급시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송부시 통보하여 드립니다.
- ③ 회원은 이용대금이 제①항의 한도 또는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②항의 신용구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④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예금잔액의 초과, 신용구매한도가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신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. 이 경우 초과금액은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.

제 3 조 (연회비)

- ① 은행은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.
- ②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	IL 다	연회비	비고
	비씨플러스카드	2,000 원	국내전용
	비씨비자플러스카드	3,000 원	국내외 겸용

단, 가족회원 및 신용구매한도가 부여되지 않은 회원은 연회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③ 은행은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카드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은행이나 비씨카드(주) 또는 비씨카드(주)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사전에 징구내용 및 징구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.

제 4 조 (대금결제)

① 은행은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드립니다.

② 회원은 신용구매한도를 이용하여 카드를 이용한 경우 이용대금 및 제①항의 방법으로 결제되지 않은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회원이 지정한 대금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. 대금결제일은 은행이 정하는 날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(카드이용의 제한)

- ① 신용구매한도가 부여되지 않은 회원은 카드를 국외이용,할부구매, 현금서비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② 신용구매한도가 부여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잔액에 상관없이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1. 사고등록 계좌
- 2. 법적지급제한 계좌
- 3. 지급가능잔액(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이용 잔액포함)부족
- 4.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
- 5.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된 계좌

제 6 조 (준 용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씨카드 개인회원약관을 적용합니다.